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51 폭행
피 고 인 허성무 (500000-00000000), 농0
주거 진00 0000 000-00 (000)
등록기준지 경0 000 000 000 000
검 사 박00(기소), 전00(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00(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 한00(0, 00세), 한00(0, 00세)는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주거지 마당 경계 문제로 분쟁을 하던 중 피고인 허성 무(0, 00세)가 마당 경계 부분에 나무를 심자, 피해자 한00, 한00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가. 피해자 한00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3. 14:03경 경0 000 000 000 0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한00과 토지 경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후 뒤돌아가는 피해자 한00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한00에 대한 폭행¹⁾

피고인은 같은 날 14: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00 및 피해자 한00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한00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 한00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을 향해 침을 뱉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을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한00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2) 피해자 한0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에게 침을 뱉었다고 생각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돌아서서 가는데 목이 축축해서 목 부분을 만져보니까 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한00이 공소사실 기재 시각에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만지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 한00이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1) 2022. 9. 1.자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한00에서 한00로 변경되었고,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않은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 한00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한00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의 목 부위에 직접 침을 뱉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다만,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한00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뒤돌아 가다가 바닥 부위를 살펴보고 다시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뒤돌아서 가는 피해자 한00의 주변 바닥에 침을 뱉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가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의 신체를 향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한00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침을 뱉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한00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데 그칠 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유형력 행사의 강도가 매우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을 향해 바닥에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한00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 한00에 대한 폭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시각인 14:41경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을 폭행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이 법원은 2022. 11. 4.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시각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그 영상 시각을 정확하

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00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한00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한00과 그의 아들인 한00을 피해 자신의 주거지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피해자 한00이 흥분한 모습으로 계속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00세의 노인이었던 반면, 피해자 한00은 00세, 한00은 00세이었던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나이와 근력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폭행강도보다 피해자 측의 폭행강도가 훨씬 강했을 것을 보이고, 피해자 한00이 가한 폭행 횟수도 더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창용 _____